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「소방시설법」 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 협조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」이 개정·공포(법률 제15810호 2018.10.16. 개정, [2019.10.17. 시행](#))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, 각 기관(부서)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협조사항: [건축허가 등에 따른 소방 동의시 건축설계도 제출 협조](#)
- 관련규정: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7조제3항

제7조(건축허가등의 동의 등)

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[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](#) 다만,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8. 10. 16.>

끝.

서울특별시장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(주택정책과장), 서울특별시장(건축기획과장), 서울특별시장(공동주택과장), 서울특별시장(임대주택과장), 서울특별시장(한옥조성과장),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(학교시설지원과장),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(학교시설지원과장),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(학교시설지원과장),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(학교시설지원과장),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(학교시설지원과장)

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전결 10/18 이홍섭

협조자

시행 예방과-26563 () 접수 ()
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(예장동 6-7) 서울 / <http://fire.seoul.go.kr>
전화 02)3706-1513 /전송 02)3706-1519 / xoghk119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